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지점 설립·폐업 신고 포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목 차 】

I. 인증서 재발급 관련 사항

1. 근거 규정	3
2. 조치 및 행정사항	3
3. 인증서 재발급 사항	4
1) 상호명 변경	4
2) 소재지 변경	4
3) 대표자 변경	5
4) 조직형태 변경	5
5)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	7
4. 온라인 신청 방법	8

II. 정관 등 변경 신고(지점 신고 포함)

1. 근거 규정	9
2.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9
3.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9
4. 정관 변경 신고 제출 서류	10
5.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11
6. 온라인 신청 방법	11
※ <u>관련 서식 모음</u>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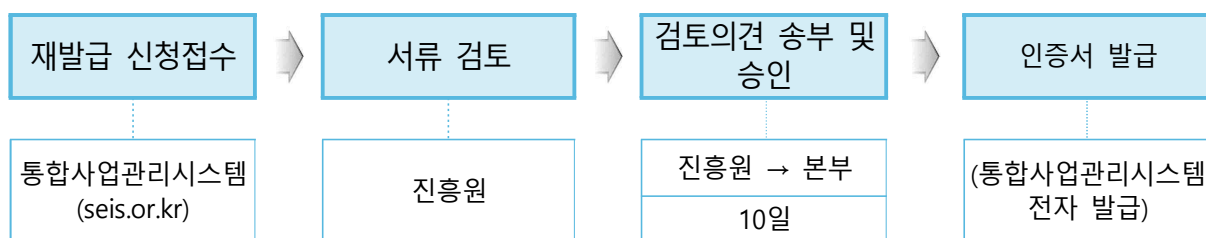
I 인증서 재발급 관련 사항

1.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 (일반변경 사항)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
 - (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
- *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할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2. 조치 및 행정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
- * 시스템 주소: seis.or.kr(사회적기업 포털)
- 사회적기업이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처리기간)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요청 이후, 제출서류가 적격할 경우 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재발급 된 인증서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전자 발급
-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3. 인증서 재발급 사항

1) 상호명 변경

【 상호명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①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 ②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 (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③ 상호명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상 '기관 명칭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만 인정
- ④ (신)정관 사본 (변경 시)
 - 변경사항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정관변경'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

2)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①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 ②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 (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③ 소재지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상 '소재지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만 인정
- ④ (신)정관 사본 (변경 시)
 - 변경사항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정관변경'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
- ⑤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 문서 (사본)
 - 법인 소유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혹은 토지대장 대체 제출 필요

3) 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①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 ②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 (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③ 대표자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상 '대표자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만 인정
- ④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 변동 시)

4) 조직형태 변경

- (공동사항) 사회적기업이 조직형태 변경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과 유급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제반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
 - 검토 결과 조직형태 변경 시 주된 사업 및 근로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사회적기업과 연관성 없는 전혀 다른 조직형태라 판단될 경우에 별도 인증 받아야 하며, 기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인증 업무지침(인증 취소·반납)에 따라 조치
 -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 (사업단) 사업단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별도의 조직형태를 만들어 모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을 이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여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변경 사실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기업 분할시) 별도 인증 필요(기업분할은 해당 법인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증취지와 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된 기업 각각 인증 필요)
-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해당 사업분야를 독립법인 형태로 독립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인증은 불필요

【 조직형태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① (신설법인)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 ② (소멸법인)폐업사실증명원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폐업 불필요
- ③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 (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④ (조직형태 변경 전) 조직형태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상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
- ⑤ (조직형태 변경 후) 이사회 명부, (상법상회사인 경우) 주주명부
 - 근로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의사결정구조 구성 여부 확인
- ⑥ (조직형태 변경 후) 주주명부 (상법상회사)
- ⑦ 4대보험 가입 내역
 - 유급근로자 고용유지 여부 확인
 - 기존 사회적기업, 신규 법인 각각 제출
- ⑧ (조직형태 변경 후)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 신규 법인 유급근로자 확인
- ⑨ (신)정관 (공증, 사본)
 - 변경사항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정관변경'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
- ⑩ 법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공증, 사본)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의 모법인'과 '신규 법인' 간 계약
- ⑪ (사업단이 분리 독립하는 경우)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신규법인 회의록(이사회 등)
 - 사업단에서 독립법인 형태로 전환한다는 내용 확인
- ⑫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5)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사유 및 전환 유형에 맞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흥원이 검토 한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인증요건 '제3장 2.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충족하여야 함
 - 변경 전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을 선택. 유급근로자 고용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은 불가함
 - 적격 서류 제출 시 현장실사 등을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및 기타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등 확인
 - * 점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받은 경우, 개선(시정) 완료 후 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 사회적 목적 유형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①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변경신청서 (하단 서식 참고)
- ②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 관련 회의록 (이사회 등)
- ③ 변경된 정관 (변경 시)
 - 변경사항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정관변경' 메뉴 통해 별도 신고 필요(지연 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
- ④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하단 서식 참고, 변경 유형에 맞는 서식 작성 필요)
- ⑤ 유급근로자 명부 (하단 서식 참고)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⑦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증빙 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른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증빙 서류
- ⑧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 월 직전 6개월 이상의 실적에 대해 회계(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서류

4. 온라인 신청 방법

【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방법 】

- ①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및 로그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② 왼편 인증·지정관리 메뉴 클릭, 인증관리 메뉴 클릭
- ③ 인증서 재발급 메뉴 클릭
- ④ 오른편 '추가' 버튼 클릭
- ⑤ 하단 인증서 재발급 신청내용 기재 및 제출 서류 첨부
※ 재발급 신청 사유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며, 다중 건일 경우 다중 체크 필요
- ⑥ '저장'버튼 클릭

【 인증서 발급 방법 】

- ①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및 로그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② 왼편 인증·지정관리 메뉴 클릭, 인증관리 메뉴 클릭
- ③ 인증신청서 발급 및 조회 메뉴 클릭
- ④ 인증서 발급 버튼 클릭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

II 정관 등 변경신고 및 지부 등 신고

1.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정관 등)

2.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 목적, 사업내용
-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정관에 명기된 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아님
 - ** 해당 변경 건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 '인증서 재발급' 메뉴 통해 별도 신청 필요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지부(支部), 채용조달, 회계

3.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 (정관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 시스템 주소: seis.or.kr(사회적기업 포털)

-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정관 변경 신고' 제출서류

1) [상법상 회사·합자조합·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사업단]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안내 】

- 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하단 서식 참고)
- ② 이사회 등 회의록 (사본)
 - 정관상 '정관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만 인정
- ③ (신) 정관 (사본)
 - 정관(혹은 해당 변경 내용을 담은 총회 등 회의록) 공증 필요
- ④ 신·구조문대조표 (하단 서식 참고)
 - 정관 개정사항 표기

* 변경일의 기산점: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

2)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등]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안내 】

- 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하단 서식 참고)
- ② 이사회 등 회의록 (사본)
 - 정관상 '정관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만 인정
- ③ (신) 정관 (사본)
 - 정관(혹은 해당 변경 내용을 담은 총회 등 회의록) 공증 필요
- ④ 신·구조문대조표 (하단 서식 참고)
 - 정관 개정사항 표기
- ⑤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인가)서 (사본)
 - ※ "주무관청"이란, 법인 설립 당시 허가(인가)를 받은 행정관청을 의미(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며, 관할 고용센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변경일의 기산점: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 (허가(인가) 통지문을 수령한 날)

5. 사회적기업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지점에 미포함
- 사회적기업 지점에 대하여 별도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교부하지 않음
- 지점은 본점과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보고 시 지점 실적 포함하여야 함

【 지점 설립·폐업 관련 제출 서류 】

- 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하단 서식 참고)
 - 정관 변경 사항이 없어도 해당 신고서 양식을 사용(사유란에 '지점 신고' 기입)
- ②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관련 회의록 (이사회 등)
- ③ 사회적기업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부(지점·분사무소) 등기여부 확인
- ④ 지부(지점·분사무소) 사업자등록증 (폐업의 경우, 폐업증명원)
- ⑤ 지부(지점·분사무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온라인 신청 방법

【 정관 변경 신고 방법 】

- ①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및 로그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② 왼편 인증·지정관리 메뉴 클릭, 인증관리 메뉴 클릭
- ③ 정관 변경, 지점 설립·폐업 신고 메뉴 클릭
- ④ 오른편 '정관변경신고' 버튼 클릭
- ⑤ 하단 내용 기재 및 제출 서류 첨부
 - ※ 정관변경 사유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⑥ '저장', '변경신고' 버튼 클릭

<서식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원		원		원	
					총수입(B)/ 총노무비(A)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서식3>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17.>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원		원	원	
				총수입(B)/ 총노무비(A)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서식4>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17.>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 사업비		총 노무비(A)		총 수입(B)	
	원		원		원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공헌 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사회적기업의 필요성”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역사회 공헌 현황”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식5>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17.>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원	원	원	
			총수입(B)/ 총노무비(A)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서식6>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17.>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서식7> 유급근로자 명부

유 급 근 로 자 명 부 (2 0 년 월 ~ 2 0 년 월)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생년월일	취약 계층 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 시간 (주단위)	월임금액	고용형태	비고
1	○○○	1975.1.1	장애인		· ·	40	206만원	기간제	일반
2	□□□	1982.12.12	일반인		· ·	40		무기 계약직	일반
3	△△△	1987.5.1.	저소득자		· ·	40			일자리 창출사업
4	◇◇◇	1960.6.30.	고령자		· ·	30	160만원		기타지원
5									
6									
7									
8									
9									
10									

<서식9> 정관변경 신고 제출서류

신 · 구 조문 대비표 (예시)

(2010.00.00.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4장 임원과 이사회</p> <p>제21조 ~ 제33조 (생략)</p> <p><신 설></p>	<p>제4장 임원과 이사회</p> <p>제21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이사회)</p> <p>③ <u>이사장은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